

경동문화 편집국 규정

제정 1998. 03. 01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대학의 현황과 위상에 대한 정보 전달, 학문과 교양의 증진, 학풍의 진작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한 대학 부속기구인 편집국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 편집국은 경동문화 편집국(이하“편집국”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3조 (국훈) 국훈은 “시사필명(視事必明)”으로 한다.

제4조 (목표) 편집국의 운영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대학-학우-학부형-사회를 연결하는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경동대학교와 학생의 긍정적 이미지와 자긍심을 드높인다.
2. 학내·외의 학술정보, 연구업적, 대학의 특성화, 학사운영의 현황, 학우들의 학구적·인격적 면모 등을 알려 안으로는 학내의 이모저모를 공유하고, 밖으로는 경동인의 위상을 전한다.
3. 기존의 교지, 학보 운영체계와 내용을 탈피하여 신개념·신체제에 맞는 뉴스레터의 성격을 지향하고 무한 경쟁 세계에서의 밝고 미래지향적인 편집 이념을 추구한다.

제5조 (업무) 편집국은 제4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소식지 <호라이즌(HORIZON)>의 발간
2. 대학문화 창달 및 학풍조성에 관한 행사
3. 기타 편집국 운영에 관한 업무

제6조 (구성) 편집국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편집국의 발행인은 총장으로 한다.
2. 편집국에 주간교수를 두며 총장이 임명한다.
3. 편집국은 편집부, 취재부, 사진부를 둔다.

제7조 (부서업무) 편집국의 각 부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

1. 편집부 : 취재된 기사 및 각종 자료의 편집
2. 취재부 : 교내외 취재 및 관련자료 수집
3. 사진부 : 교내외 행사 촬영 및 사진부 자체 행사

제8조 (편집국원) 편집국의 구성과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편집국원은 편집장, 부장, 정국원, 수습국원을 둔다.
2. 편집장은 본 대학에서 4개 학기를 수료한 학생으로 주간교수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3. 각 부서는 필요에 따라 부장을 둘 수 있으며 주간교수가 임명한다.
4. 수습국원은 1학년 학생 중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선발하며, 1학기간의 교육과정을 이수 후 정국원으로 임명한다.

제9조 (예산 및 결산) 편집국의 예산 편성과 결산에 따른 회계의 원칙은 교비 회계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지침을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